

의안번호	제 193 호
의 결 연 월 일	2023년 3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종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2월 28일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종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2월 28일
발의자 : 김종필, 이동우, 김호경,
박지현, 박진희, 변중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소방활동 중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장례비용 지원사항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례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3조)
- 나. 장례식의 종류 중 ‘충청북도장(葬)을’ ‘충청북도청장(葬)’으로 변경함(안 제4조)
- 다. 조문명칭을 변경하여 정례의 범위와 기간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 소요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충청북도청장(葬)

제5조의 제목 “(장례 비용 지원)” 을 “(장례범위 및 장례기간)” 으로 하고,
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
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충청북도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·운영
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.
-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
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장례비용) ① 도지사는 장례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순직 소방
공무원 등 1명당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되, 부
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
하지 아니한다.

1. 노제 비용
2. 삼우제 비용
3. 사십구일제 비용
4.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

5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

6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

②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2조에 따른 소방 활동 중에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가족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.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명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애도기간 운영)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소속기관은 조기 계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,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달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장례위원회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장례식의 구분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충청북도장(葬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·다. (생 략)</p> <p>2. ~ 5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4조(장례위원회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충청북도청장(葬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장례 비용 지원) <u>도지사는 장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영결식 비용</u></p> <p>2. <u>장례식 비용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장례범위 및 장례기간) ① <u>충청북도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·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.</u></p> <p>② <u>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장례비용) ① <u>도지사는 장례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순직 소방공무원 등 1명당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되,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</u></p>

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노제 비용

2. 삼우제 비용

3. 사십구일제 비용

4.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

5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

6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

②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2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에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가족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.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명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8조(애도기간 운영)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소속기관은 조기 계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,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달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4. 1 8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자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4. 18.>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소방활동 중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장례비용 지원사항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

2. 비용발생 요인

- 현행 소방활동중 사망한 순직자에 대해 영결식 및 장례비용을 지원 중에 있음
- 조례를 개정하며 영결식 및 장례비용외 조문객 식사비용(1인 5천원이하) 지원으로 추가 비용 발생
-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순직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은 경우 지원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제7조(장례비용)

4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

나. 추계 결과

- 산출과정(1년간) : 5천만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자체사업(도비 100%) * 예비비

